

# 2020년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 선정 평가 결과

## 1 추진목적

- 우리 청 사전행정정보 공표 정보의 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정보의 품질 개선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 기틀 마련
- 또한, 지속적인 사전행정정보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선도적인 문화재행정 정보공개서비스 실시 등

## 2 관련근거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1항 및 제2항, 시행령 제4조(행정정보의 공표 등)

제7조(행정정보의 공표 등)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,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<이하 생략>

- 행정안전부 정보정책과-428호(2020.2.3.) “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실시 안내”에 의거 사전행정정보 확대 실시

## 3 추진경과

- 2020년 사전행정정보 공표 신규 발굴 및 확대 등록 요청(20.6.22.)  
- 사전행정정보 공표 등록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
- 2020년 사전 행정정보 공표 신규 발굴 영상교육 실시(1회, '20.7.17.)
- 2020년 사전행정정보 공표 목록 등록 및 내용 수정 요청(20.7.28.)
- 2020년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 선정평가(서면) 계획('20.8.10.)

- 1 -

## 4 평가내용

### □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 평가결과

-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 심의의견 및 내부의견

부 서	공개내용(제목)	심의의견	내부의견
안전 기준과	2019년 문화재 매매업 현황	기 게재 (C위원)	불수용 2019년 문화재매매업 현황 정보는 2019.12.31. 까지 작성되어 2020년 공표 정보에 해당되며, 기 게재 정보가 아님.

### □ 주요 심의의견

위원	내용
A위원	사전에 공표되어야 할 내용들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도 됨. 예를 들면, 현황, 실행계획, 이용현황, 운영계획 등으로 끝나는 내용들은 너무도 당연히 공개 되거나, 공개 요청이 있을 시 공개되어야 함. 그러므로 사전공개 적합성을 논의할 필요성이 약함.
B위원	전체적으로 문화재청 생산 기록정보에 대한 사전정보공표가 전년도 비해 적극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파악됨. 문화재청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, 문화재 행정 및 정책의 투명성, 책임성 확보, 문화재와 관련된 국민의 권익 및 정보 제공 차원에서 볼 때, 상기의 사례들이 우수한 사례로 판단됨.
C위원	전체적으로 사전공표대상 정보의 내용이 적절하고 부적합 사례가 거의 없으며 지난해에 비해 대상 정보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여 적극적으로 사전공표대상 정보를 선정하였다고 판단됨.

## 5 향후계획

- ('20.8월 중순) 2020년 문화재청 사전행정정보 업로드(정보공개시스템)
- ('20.12월 말) 2020년 문화재청 조직성과 정부혁신과제 '공공정보 공개 노력도' 결과 통보(혁신행정담당관)

- 2 -